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

소관부서 : 보건소(질병관리과)

제정 1996 · 3 · 1 조례 제 127호 개정 1997 · 9 · 18 조례 제 212호 (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) 개정 1999 · 6 · 23 조례 제 287호 개정 2002 · 1 · 10 조례 제 404호 개정 2004 · 11 · 24 조례 제 513호 전부개정 2021 · 3 · 22 조례 제1681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23 · 9 · 27 조례 제1981호 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 일부개정 2024 · 10 · 31 조례 제216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4·10·31〉
- 제2조(진료비)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다.
- 제3조(진료수가)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
- 제4조(약가)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,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. 다만,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5조(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) 「의료급여법」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한다.
- 제6조(그 밖의 수수료) ①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

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

수한다.

- ②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없는 수입의약품이나 예방접종 등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(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)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.
-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로 징수한다.
- 제7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·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·9·27〉
 - 1.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
 - 2.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(사회복지시설 등)
 - 3.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
 - 4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
 - 5.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
 - 6.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
 - 7. 「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진료비
 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 진료비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말한다.
 -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.

제8조(납부)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.

제9조(추징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

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〈2021·3·22 조례 제1681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이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」를 폐지한다.

부칙〈2023·9·27 조례 제1981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·10·31 조례 제2163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〈개정 2024·10·31〉

제증명발급 수수료

(제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준	수수료	비고
1. 건강진단서 및 그 밖의 진단서	1부	2,000	
2. 진료기록부 사본	5매	1,000	
	6매부터	매당 100	
3. 결핵확인서	1부	2,000	
4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	1부	3,000	
5.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	1부	300	